

인권정보자료실
Mdl.42

2004-2 간행물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개원22주년 기념세미나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인권정보자료실
Mdl.42
교남소망의집



2004-2 간행물

개원22주년 기념세미나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2004



기념사

한번의 말속에 두 번의 실천이 깃들어 있기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예전보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마저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사회 현존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통한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아래 저희 기관은 과거의 정서적 기반에 기초했던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반 위에서 확고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도 그 노력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하여 가장 취약한 곳을 듣다면 아마 생활시설을 떠올릴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인권고의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즐비합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지적능력 저하, 집단생활, 최저한의 생계유지 등이 인권보장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관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늦게나마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권 적용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일들과 당면한 과제들로 인해 인권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 적용방법들을 찾았지만 법률과 관계된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 고민 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파견사업'을 지원받아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 규정을 만들었다 것도 흐뭇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또 하나의 유익은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우리의 의식이 제고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고민과 다짐으로 마련된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이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 사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 즉 장애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선언이나 규정이 아니라, 실행하고 생활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단어의 나열이나 주장만으로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의 말 속에 두 번의 실천을 담아 일상생활에서부터 장애인의 권리가 회복되고, 나아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현존으로 이어지는 참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염형국 변호사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세미나의 주제발표, 사례발표,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04 . 9 . 2 .

교남소망의집
원장 황규인

소중한 첫걸음을 축하하며...

교남소망의집 개원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시설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사실에 강서구청장으로써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소위 몇몇의 미신고시설 또는 조건부 신고시설들에서 인권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가 항존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지리적 및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시설운영자와 사회 일반의 관심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생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생활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생활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와 직접 관련된 시·군·구청 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나 지역사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등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남소망의집 개원22주년기념세미나의 주제가『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것은 현 시대적으로 매우 적절하며 뜻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의 복지시설들이 전문적인 복지마인드와 개방적인 시설운영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교남소망의집은 그 선두에 서서 시설복지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금번 세미나의 주제 역시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 주제발표자이신 염형국 변호사와 사례발표 및 지정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황규인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2.

강서구청장

307

일정표

- 일자 : 2004년 9월 2일(목)
- 장소 : 강서문화센타
- 진행 : 송 남 영(교남소망의집 기획행정실장)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강 사
13:00 ~ 13:30	30 "	- 접수 및 자리배치	
13:30 ~ 13:35	5 "	- 자리정돈 및 개회	사회자
13:35 ~ 13:40	5 "	- 모범직원 및 후원자 표창	사회자
13:40 ~ 13:47	5 "	- 개회사	황규인 교남소망의집 원장
13:47 ~ 13:54	5 "	- 축사	유영 강서구청장
13:54 ~ 14:00	5 "	- 폐회 및 자리정돈	사회자
14:00 ~ 15:00	60 "	- 주제발표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15:00 ~ 15:20	20 "	- 휴식	
15:20 ~ 16:20	60 "	- 사례발표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시안	윤덕찬 실장 (교남소망의집 재활사업실)
16:20 ~ 16:30	10 "	- 휴식	
16:30 ~ 16:45	15 "	- 지정토론 1	박숙경 팀장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16:45 ~ 17:00	15 "	- 지정토론 2	이지형 사회복지사 (가온들찬빛)
17:00 ~ 17:15	15 "	- 지정토론 3	임효경 팀장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17:15 ~ 17:40	25 "	- 질의응답 및 폐회	사회자

◇ 기념사 : 황규인 교남소망의집 원장

◇ 축사 : 유영 강서구청장

◇ 일정표

◇ 세미나

■ 주제발표

발표 :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주제 :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 13

■ 사례발표

발표 : 윤덕찬 (교남소망의집 재활사업실장)

주제 :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시안 / 37

■ 지정토론 1

발표 :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타 팀장) / 91

■ 지정토론 2

발표 : 이지형 (가온들찬빛 사회복지사) / 101

■ 지정토론 3

발표 : 임효경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팀장) / 105

◇ 질의 응답

◇ 폐회

주제발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I. 들어가며

국제연합(UN)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제30차 총회)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인재).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장애인구의 출현율은 전체 인구의 10%라고 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3.09%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의 범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헌법상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몫이해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소외계층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왔다. 그리하여 장애인,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단순히 보호와 관리의 객체일 뿐 그들에게 인권은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II. 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가. 인권의 개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의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제 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UN총회 결의 3447, 제30차, 1975년 12월 9일 채택)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 사회가 맷고 있는 중요한 약속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각 나라의 헌법과 1948년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가 간에 맺은 범인 ‘국제인권조약’ 등은 하나같이 인권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대접받고 싶어 하고, 경멸받고 차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인권의 출발점이다.

첫째,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은 어떠한 특권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이다. 즉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셋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인권교육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나.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인권교육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첫째, 생명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고귀한 이상과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 육체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삶’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의미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과 낙태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말로 시작된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노예나 예속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체포나 구금·추방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사생활이나 통신에 간섭받지 않아야 하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평등이다. 모든 사람은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지만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종교, 피부색, 빈부’ 등의 차이를 이유로 갖가지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차별이 끼치는 해악은 무엇보다도 차별 받는 사람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해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많다. 인간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당위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법 앞에의 평등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헌장도 제1조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실질적 평등이란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등. 즉 결과적 평등을 말한다. 여성, 장애인 등 역사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 집단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미의 차별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간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등에 있어서 다수집단보다 우선적인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고용할당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정의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를 꾀하는 것, 누구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마련하는 등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사회적 책임이다.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는 장애인 그 밖의 사회적 소수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2. 장애인의 법률상 권리

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적 정책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그 중 장애인 복지 분야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

지법이다. 여기에 장애인 교육문제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있다. 그 밖에 교육법이나 건축법과 같이 법률 내용 속에 특수교육 항목을 삽입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정하여 간접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등 소위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증진을 책임을 진다”고 정함으로써 적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의 책임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하게 된다.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을 두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대체 시설의 법적 양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법률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제31조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장애인에게 역시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위 제4조는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껏 일반의 인식처럼 기초적 생계만을 보장하는 국가의 시혜적 행위를 말함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조문이라 할 것이다.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명시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제 복지는 정부가 주는 대로 받기만 할 수 있는 수동적, 반사적 이익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차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성재).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들도 장애를 입지 않은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사가 학생을 찾아가 지도하는 순회교육, 장애아동과 장애를 입지 않는 아동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상호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교육, 장애의 특성에 따라 지도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 교육, 치료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교육, 부모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지도에 동참하도록 하는 보호자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나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아 교육환경은 전보다 많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 한사람이 맡아야 할 장애아동이 13명이 넘고(교사 1인당 2~3명이 적절함), 교육환경도 마치 7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발달장애인과 시각, 청각 장애아들은 분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이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문제가 단순히 생계 보장적 측면만을 강조해오던 기존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김정열).

3. 장애인인권헌장의 제정

UN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1998년 12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인권헌장을 공포하였다. 장애인인권헌장은 비록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없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구속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 현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원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III. 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의 필요성

1. 인권의 관점에서 본 생활시설의 문제점

가. 시설보호의 불가피성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 안전을 위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시설에서 출발하여 그중 치료기능이 발전한 형태가 오늘날의 병·의원제도이고, 치료기능보다 격리 내지는 수용보호 측면으로 발전한 형태가 오늘날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분류되는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등이라고 할 수 있다(민변).

재가복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룹홈과 같은 지역사회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시설보호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1만명당 입소가능 시설 수는 일본에 비해 1/5 수준이며, 시설 직원 1인당 장애인 수는 한국은 평균 3.8명, 일본은 1.6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있다. 장애인 재활의 기본 개념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재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는 불가피하다. 조사결과 장애인은 특성상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적어도 약 4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현재 수용가능 인원은 약2만4천여명 정도이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시설 앞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입소에 최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김정열).

나. 생활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시설 설치기준의 무분별한 완화에 따른 문제점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장애생활시설은 일정한 법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설설치에 따른 부지와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입소시키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의 구조가 장애인의 생활에 적합한지, 설치의 위치가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에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인 적법성만을 고려하다보니 지역이기주의 또는 신축예산단 가 등을 이유로 시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대부분 설립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시설 내에서 단순히 보호대상자로 전락하게 되어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사회적응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재활은 요원하게 된다. 그리고 시설의 외곽화는 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출퇴근을 어렵게 하고, 더욱 이 시설 내에서 주·야간 상근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입·퇴소상의 문제점

현행 장애인생활시설의 입소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의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47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의뢰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절차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생활시설에 직접 입소를 의뢰하고 있다. 시군구에 의해 입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시군구에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군구는 사후 행정조치만 취함에 따라 시설입소가 불필요한 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임성만).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무연고자를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는 실비를 납부하게 하여 시설의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을 가족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친권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무연고자를 가장하거나 실비를 납부하다가 일부는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고 실비입소제도는 일부 시설 측의 뒷돈 거래요구 등의 역기능으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김용득·유동철).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입소장애인의 수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

고 있어 일부 시설에서는 생활시설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자도 퇴소를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고, 감사 때마다 신고된 장애인 수를 맞추기 위해 장애인들을 서로 빌려주는 시설도 있는 형편이다.

(3) 시설운영의 폐쇄성·비민주성

지금까지의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없이 폐쇄적인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 주체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시설보호가 사회방위적 단계에서 사회복지적 단계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이다. 시설생활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시설보호가 정상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시설보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및 강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박석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외곽화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예산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운영책임자 또는 경리담당 직원 정도만 알고 있고 일반 직원에게는 시설전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김용득·유동철).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운영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의 미흡

장애인생활시설의 주체는 시설에 주거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장애인의 욕구는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있고, 시설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여지가 적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강영실).

그리고 시설퇴소나 지역사회주거형태로의 이전, 나아가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의 운영체계가 획일적인 제공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입소장애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원과의 교류나 소비행위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생활에 무력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임성만). 이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인권 개념 도입의 필요성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다. 장애인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러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정상적인 인간과 다른 정상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존재였고, 일탈적인 존재인 장애인은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었다.

특히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 있어서는 입·퇴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고, 시설운영의 객체로서 단순히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시설 밖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져 평생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설병에 걸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여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단순한 서비스의 객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인권의 주체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시설장애인에게도 인권 개념을 도입하여 그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IV.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방안

1. 장애인시설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그 한계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론은 정상화(normalization)이론과 사회통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정상화이론

정상화이론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지체인의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으로 시설보호에 대하여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한다. 즉 정상화이론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 인생 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시설 집중화에 반대한다. 정상화이론은 기존의 지배적인 서비스 이데올로기인 격리보호에 대하여 반대하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정상화는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시설집중화에 대하여 반대한다(박석돈).

위 이론에 대하여는 '평등한 참가를 통한 사회통합'의 이념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는 찬사와 함께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맞추어야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흠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유동철).

나. 사회통합이론

사회통합이란 정상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한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치가 절하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개인 그

자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다. 기존이론의 의의와 한계

사회통합이론은 결국 정상화이론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상화이론의 한 줄기이다. 일탈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고, 또 외모는 나이와 성이 비슷한 사람들의 문화적 범위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정상화이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일탈자로 취급하여 가치절하시키고 그와 같이 가치절하가 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보호 격리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하던 시대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누려야 함을 강조하여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설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이론이다.

그러나 정상화이론은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을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현실순응적인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로 하여금 '정상성'이라는 어떠한 관념에 적응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짐 아이프). 또한 시설의 장애인들을 단순히 서비스의 객체로 인식하여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을 정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진정한 욕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2. 인권의 관점에 따른 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ㄱ. 소규모화

시설의 규모 면에서 볼 때 기존시설의 대부분이 대규모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의 대규모화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식과 시설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 및 관료적 태도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보호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시설병을 유발하고 있다(사회복지협의회).

우리나라는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방식을 인원비례지원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시설생활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지속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모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호단가의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30명을 기본으로 하여 10명 단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김정열).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시설을 확충하여 단순보호를 벗어나 서비스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일상생활상의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심신의 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수용하여야 한다.

나. 지역화·개방화

장애인시설에서의 주거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관련된 제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적 운영을 해야 한다.

시설보호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설생활자의 사회자립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은 전반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강화는 시설의 개방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다.

다. 인권보장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자 중심의 시설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공개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원래의 목적에 따라 진행되지 바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생활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운영이 시설생활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의와 통지가 의무화되어야 한다(이인재).

라. 시설운영의 전문화

시설생활자의 삶의 수준은 제공되는 일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책임주체인 시설운영자의 의지에 달려 있고 이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수준에 달려

있다. 시설은 시설생활자들마다 필요로 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생활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시설생활자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시설운영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에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생활자를 단순히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시설생활자들의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수준이 낮고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조하여 이직률이 높고 전문가들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여 정부가 그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야 하고, 기존의 시설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직원들도 시설운영의 주체로서 생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설비를 현대화·과학화하여 시설생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역복귀와 재활이 가능하게 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가. 신규시설의 신고기준 엄격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에 의하면 시설에서 300명까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시설에서 시설생활자가 인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수용가능인원은 가급적 축소시키고, 지역과 멀리 떨어진 외곽에 신규시설을 짓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각 시설마다 수용하려는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확대

시설이 장애인에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장애인이 시설을 일반가정과 같이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룹홈은 시설장애인

의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룹홈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택에서 3~5명 정도의 소수의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이에 필요한 도움을 생활교사에 의해 지원 받는 생활형태이다. 우리나라 1992년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하나로 4개 가정을 시범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현재는 그룹홈의 입주대상을 정신지체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입주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홍종원).

다. 시설생활자들의 자기결정권 보장

먼저 입·퇴소 단계에서 시설입소자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의 지원체계가 현재의 시설중심지원방식에서 시설생활자인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체계가 바뀌어 질 것이다.

입소 후 시설생활 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객체가 아니라 생활자 자신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은 시설거주자·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지역주민·후원자 대표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였다.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운영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 시설생활단계에서 시설생활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시설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그 보호자의 결합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보호자들이 시설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자, 기아를 인위적으로 발

생케 하는 실비입소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인 부모들이 시설운영 체제에 대한 감시세력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리. 시설에 대한 평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3년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시설설비와 직원의 수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위주이고, 시설생활자들의 만족도나 그들의 인권보장측면에 대한 평가항목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벌칙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평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형편이다.

시설생활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시설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인권보장 측면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지침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1984년 전체 218개 사항으로 세분된 시설운영기준이 마련되어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1989년 시설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체크 리스트와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량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기본사항(운영방침 계획, 이사회 운영, 자산회계 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과 시설생활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서비스, 식사, 보건의료, 규칙, 가족관계, 주거환경, 시설생활자 인권 등), 직원에 관한 사항, 안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8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정부는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의 정도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설간의 차등지원책을 도입함으로서 시설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김정열).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민관합동의 시설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 교수와 인권단체, 변호사 등이 민간에서 결합하여 정부 측과 공동으로 상시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시설장애인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시설운영자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법 등이 있을 뿐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지난 1972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Wyatt v. Stickney 사건을 통해 시설수용자들의 제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시설수용자에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외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권리,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험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할 권리, 자격 있고 훈련된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 억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시설에서 퇴소할 권리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에서 확인한 시설생활자의 권리를 많은 주에서 주법 또는 정신장애인기관의 규정으로 채용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Robert M. Levy & Leonard S. Rubinstein).

V. 나오며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시설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을 수용하여 최저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에 치중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시설장애인들의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서비스의 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인권보장의 예외지대에 격리되는 사태가 계속 둑인되는 상황에서는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사회의 가장 하층계급을 형성하는 수용시설 피수용자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하층계급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의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사회의 최저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며 저절로 다른 이들은 그 수준 이상으로 인권을 보장받게 되기 때문이다. 수용시설 내의 인권기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경우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그 기준 이하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 결국 시설의 문제는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박래군).

시설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시설분야에 있어서 시설의 운영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시설생활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치료를 담당하면서도 인권 전문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서 인권 전문직인 시설 관리자들의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에 대한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 고 자 료

그룹홈의 운영과 실제, 홍종원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실태와 대책, 박종만·윤찬영·이찬진(민변 1998.9.)

사회복지서비스와 정상화이론, 울펜스 버거(김용득 역), 나눔의 집 출판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단상, 박래군, 진보평론 제4호

사회복지시설의 대안적 운영방안, 이인재

사회복지시설의 변천사, 박석돈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짐 아이프(김형식·여지영 역), 인간과 복지

장애인수용시설과 인권, 김정열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성만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방향, 조홍식

장애인복지의 이해, 강영실, 도서출판 신정

장애와 사회복지, 김미옥·김용득·이선우, 학지사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 김정열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김인재

장애인 인권현장

장애인 인권현장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체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6.

지역사회재활의 통합적 실천방법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역할, 교남소망의집
개원2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3.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제언, 이성재.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인간과 복지.

The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Robert M. Levy &
Leonard S. Rubinstein,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사례 발표

교남소망의집 재활사업실
윤덕찬 실장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시안

I. 규정 제정의 필요성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달리 정신지체인의 경우, 지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입소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연고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지적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짐으로써 인권보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집단생활 등의 시설 특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제한들로 인해 그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생활 관련 내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생활장애인 역시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 소유물 보관·관리,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 등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에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부 지침의 부재 및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소유와 관련해서 시설환경 및 담당교사의 태도에 따라 개인별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일괄적인 보관으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장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보호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적재산의 소유·사용·처분 등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인의 지적능력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고 더

나아가 시설퇴소를 하여 자신의 재산(동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신지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부분(주택 구입·전세, 근로계약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며, 또한 무연고로 인해 시설입소를 하였지만 자립능력이 향상되어 취업 등으로 재산이 조성되었을 경우 갑자기 연고자가 나타나 해당 장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며, 이때 시설 내에서 그들을 보살펴 온 시설장 및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돈이 쓰여지거나 저축되기 전에 장애인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용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의 금전에 대한 시설내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으로써 담당직원의 마인드에 따라 장애인의 사적 재산이 관리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단체변호사파견지원사업'을 통하여 공익변호사와 함께 본원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보호방안 모색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함으로써 시설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제 역할을 정립하고자 사업을 수행하였다.

II. 규정 제정의 경과보고

- 2004. 2.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파견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2004. 3. 31. - 1차 정기회의
 - 위원구성 : 염형국, 윤덕찬, 노규금, 이형남, 김진, 나영옥, 한은정
 - 회의내용 : 향후 추진내용 및 계획 수립
- 2004. 4. 7. - 2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보장 영역 분류 및 검토
- 2004. 4. 13. - 3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개인물품, 자기관리)
- 2004. 4. 20. - 4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성생활, 직업생활)
 - 스터디 : 세계화 시대의 인권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 역저)

- 2004. 4. 27. - 5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주거배치, 개인물품관리, 식생활 등)
 - 스터디 : 인권과 인간의 욕구
- 2004. 5. 11. - 6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금전관리, 개인위생)
- 2004. 5. 18. - 7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인권지표 및 규정화 작업의 일정 조정
- 2004. 5. 24.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인권상담분석보고회 참가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참가
- 2004. 5. 25. - 8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대인관계, 음주 및 흡연)
- 2004. 6. 1. - 9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종교생활), 재산권보장규정 업무분담
- 2004. 6. 9. - 10차 정기회의
 - 스터디 : 민법상 재산권의 처분내용
- 2004. 6. 22. - 11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영역별 내용 취합 및 검토
- 2004. 6. 29. - 12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재산권 보장을 위한 규정 초안 검토
- 2004. 7. 6. - 13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세미나 개최방안 논의, 규정 내용 검토
- 2004. 7. 14. - 14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초안 검토 작업
- 2004. 7. 20. - 15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재산권보장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
- 2004. 7. 27. - 16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향후 일정 및 규정 작업에 대한 검토 작업
- 2004. 8. 3. - 17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최종안 작업
- 2004. 8. 17. - 18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재산권보장규정의 최종안 작업
- 2004. 8. 24. - 19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세미나 진행원고 정리 및 준비작업

III.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시안

1. 총 칙

유엔은 1980년 1월 13일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개발전략에 통합되어서 추진해야 하고,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중의 이해, 그리고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담고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ESCAP(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은 1992년 12월 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가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입법을 통한 장애인정책에의 접근문제, 정보에의 접근문제, 일반인의 인식개선에 문제, 접근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교육, 훈련 및 고용, 장애발생 예방, 재활서비스 확대, 보장구 그리고 자조조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는 인권 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라야 비로소 장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장애문제를 권리문제로 인식해서 장애관련 권리선언은 지난 1971년 12월 유엔에서 결의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언은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그들의 통상적인 생활(Normal life)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12월 9일 장애인에 대한 기

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시민권과 정치권, 자립(Self-reliant), 경제적, 사회적 보장,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한 요구, 가족생활, 착취로부터의 보호, 법적 원조, 정보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의 권리선언'이 유엔 30차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1976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곧이어 1980년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 평등, 개발 평화에서 모든 연령 여성 장애인의 상황 개선을 채택했다. 이어 유엔아동기금에서는 아동 장애의 예방과 재활, 1955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1975년 국제노동기구는 제네바대회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재통합에 관한 결의 등이 행해졌다. 1977년 세계맹인복지협의회, 농·맹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헬렌컬러세계대회에서 농·맹인의 권리선언을, 1972년 세계농아연맹 총회에서는 농아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실천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일반에 대한 법학적 논의, 즉 장애인 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그 보장의 법적 구조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다.¹⁾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퇴영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 나아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동기가 다분히 정치적 명분론에 있었고 그 입법내용이 지극히 장식적이었다는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고 본다.(이홍재, 1989:8)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김유성, 1997:378) 지금까지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문제는 사회보장법의 체계 중에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 입법

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체계를 갖춘 법학적 연구로는 법무부(1989)와 이에 소수된 이홍재(1989), 강경선(1989)이 있으며, 그 후 우주형(1992), 이재우(1996)와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1998) 등이 있는 정도이다. 이 중에서 이홍재(1989)는 장애인 인권보장의 사회법원리 및 장애인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를 "장애의 사회성" 관점에서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강경선(1989)은 "국민주권 실현의 주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의 법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들과도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총체적 인권보장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시적인 사회보장법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통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장애인의 사회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는 법 원리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인간상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는 국가상의 정립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이들은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권영성, 1998:337)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理想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에서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제3조) 및 이들에 대한 사회연대책임(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된 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인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이홍재, 1989:14)

나.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이홍재, 1989:15)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제11조) 및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6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며,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이며,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권영성, 1998:352)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법 앞의 평등원칙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기회의 평등’에 근거하여 ‘장애라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 앞의 평등에 있어서의 ‘평등의 의미’에 관하여는 상대적 평등설을 취하여 능력에 따른 평등, 즉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이론을 장애인보호의 평등원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해석이 동등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어떤 차별도 허용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의 준거가 되는 ‘능력’ 그 자체에 핸디캡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른 평등원칙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영원한 불평등만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을 기회의 평등 내지 출발의 평등으로서 형식적·추상적 평등만을 의미한다고 본 근대적 평등사상은 여기에 한계가 있었다. 근로능력의 차이는 영속적인 것이며, 그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에 단지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기회조차 주어졌다고 할 수 없다.

현대적 평등사상은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의한 빈곤, 실업 등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평등을 의미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란 다른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원조, 즉 '기회의 제공'이 행해질 때 비로소 의의가 있다. 이는 '불공정하게 불리한 기준선(unfair disadvantaged baseline)'²⁾에 서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경쟁'은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 즉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사이에 있어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수요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보호기준만 제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장애인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수요에 따른 평등"을,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능력에 따른 평등"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어 종국적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확보의 기틀이 구축된다고 하겠다.(이홍재, 1989:15) 이러한 지원에 의해서도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된 생존권 보장이 존중되는 수준까지는 '결과적이며 수요에 따른 평등'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이재우, 1998:7)

결론적으로 장애인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소극적으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장애인 인권의 직접적인 법이념적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므로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라

2) '불공정하게 불리한 기준선'은 자신의 지배범위를 벗어난 외부적 힘(예를 들어 장애)에 의하여 야기된 최저수준 이하의 결핍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1983년의 ILO제159호 협약 제4조가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동등을 위한 특별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재우, 1998:7)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다.(권영성, 1998:563)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 하층구조인 근로권, 근로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보건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상호 연대적 보장을 통하여서 구체적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며,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³⁾ 따라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입법권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체적 권리규범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김유성, 1997:92) 그러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다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나뉘어 지는데, 그 실체적 권리은 소득보장수급권, 의료보장수급권, 복지서비스조치수급권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절차적 권리은 권리구제쟁송권, 행정 및 입법참여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으로 구성되는 규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김유성, 1997:93, 이홍재, 1989:16)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9조는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3) 헌법학에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추상적 권리설을 취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그러나 추상적 권리설은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적인 권리로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규정설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실질적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추상적 권리설은 근대의 소극적 시민국가에서 현대의 적극적 복지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과도기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대변하는 애매한 논리의 산물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보장수급권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이므로 국가가 사회보장실현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권영성, 1998:567)

관련 예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있어 생활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향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정상생활에 필요한 일의 모두 혹은 일부를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2.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3. “특정권리”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4.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시설로써 장애인이 장·단 기간 주거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본 규정에 의한 교남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본이념 하에서 장애인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의 규범적 구조는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김유성, 1999:93면 이하, 김용득/김미옥, 1995:378 이하).

따라서 장애인 인권의 보장체계는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로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보장체계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현대의 사회보장법의 특색은 국민 전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른바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편주의란 근로자 또는 빈민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국민전체를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으로 망라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보장 재원의 한계,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요인 때문에 국민전체가 아니라 빈곤계층만을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별주의(selectivism)와 대립된다. 보편주의가 이념지향적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현실치중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의 경우에, 이념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빈곤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계층의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인보호의 경우에도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 등 장애인 인권 실현의 기반이 취약한 풍토에서 보편주의 이념은 형식화·허구화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별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경제논리 때문에 인권논리가 제약당하는 또 다른 위험과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장애인 보호원리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에서 양자택일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에 따른 요보장성(要保障性)의 정도에 의하여 긴급성·절박성이 강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 보호를 확충해가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빈곤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즉 중복장애인(빈곤과 장애)과 중증장애인부터 선별적으로 실질적 보호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이 속하는 세대의 소득정도 그리고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보호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사이에 수요충족의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보호원리를 「적극적 선별주의」 또는 「단계적 보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이홍재, 1989:19)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장애인의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빈곤계층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책임에 의하여 그 기본적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빈

근계층의 장애인은 빈곤과 장애라는 이중의 고통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중고소득층의 장애인에 비해서는 그 생활상의 수요의 정도가 급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계층에 있어서 노동능력이 없거나 이를 상실한 중증장애인·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보장,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보장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조치와 아울러 사회참가촉진대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인보호원리에 있어서 적극적 선별주의를 단계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중증·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빈곤계층의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료재활급여와 복지조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보장을 통한 소득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빈곤계층의 일반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은 의료재활 및 복지조치대책과 고용보장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정부 및 기업과 지역공동체간의 제휴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이 상호연계체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적극적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빈곤계층 장애인에 대한 기본수요의 보장이 내실화를 거두면, 다음 단계로서는 중고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보호를 행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장애인 간의 보호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그 수요에 적정한 배분적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은 앞의 “기본적 수요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보장체계이며, 단지 빈곤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장애인에 대해 그 종류에 따른 구체적 수요를 보장하려는 점이다.

생의 단계에 따른 장애인 인권보장체계는 출생 이후 성장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생의 단계에서 필요한 장애인의 생활상의 수요에 시각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 수요의 보장과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장과 그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단지 각도를 달리하여 생의 단계에 즉응하는 수요를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유아 및 아동기, 학령기(소년기), 취업연령기(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시설내 위원회 설치·운영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관장이나 직원 한사람이 준비하고 실행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시설내 전직원들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지가 반영이 될 때 시설 내에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교남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행복추구의 실태를 조사·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인권보장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인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관련 예규

제4조(실천원칙) 본 규정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듯이 모든 이와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히 다음 각 호의 실천원칙을 이해하고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수한 권리의 인정
2. 이 특수한 권리와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
3. 장애를 가진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동등한 모든 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4. 동 규정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것일 뿐 완전한 이상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호의 내용에 어긋나는 침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제5조(인권보장위원회) ① 교남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장 직속으로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2.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 차별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유형화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의 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상황들을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소비자권리, 여성

장애인권리 등을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영역(중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제적인 차별 상황과 연결하여 명시화(소분류)하여, 영역별·부문별 장애인 차별 실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부문별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장애인 차별 유형화의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영역(중분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아동지표와 청소년 인권지표, 그리고 UN인권위원회 보고서, 장애인인권침해 유형조사 등을 참고하였다.

UN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과 장애인의 인권과의 연관성을 분석 했으며,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조사는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7개)과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7개)으로 크게 분류하여 총 14개의 대항목으로 구성 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와 유사하고, 사회 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에 근접한 내용으로 상당부분에서 UN인권위원회 보고서와 부합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쉽게 인권침해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는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2 개인물품 관리 보장, 3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4 종교생활의 보장, 5 성생활의 보장, 6 식생활의 보장, 7 프로그램의 참여 등, 8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등으로 분류하였고, 사회적 권리는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2 교육 및 학습 보장, 3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4 선거 및 참정 보장, 5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6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관련 예규

제6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 본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제7조(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① 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 개인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국제연합(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2. 개인물품 관리 보장
3.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4. 종교생활의 보장
5. 성생활의 보장
6. 식생활의 보장
7. 프로그램의 참여 등
8.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9.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8조(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① 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 개인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2. 교육 및 학습 보장
3.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4. 선거 및 참정 보장
5.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6.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7.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3.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시설장애인의 자기관리 및 개인위생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개인별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케 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적 권익 보호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생활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개인의 사적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획일적인 헤어 스타일이나 의복의 착용, 그리고 타인에게 수시로 개방되는 사적 공간 등은 장애인

을 더욱 구빈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첫째, 동일연령대의 비장애인의 사회적 취향에 따르도록 한다. 이는 장애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닌, 또래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성향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둘째,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최대한 존중토록 한다.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의사표현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사표현이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휴먼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토록 한다. 이것은 시설의 내·외적 형태나 배치와도 연관이 되지만, 시설직원들의 인식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즉 시설의 환경에 있어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부족한 환경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장애인의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직원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역할은 당위적인 내용과 현실 가능한 내용을 규정화하였다. 이를테면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피복비는 반드시 시설장애인의 피복 구입 및 수선 등의 명목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도 규정화하였으며, 자기위생을 위해 신체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고 실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규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침해 사례

최근 모 정당의 전 대표였던 000씨가 00재활원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목욕을 시켜주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알몸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순간이었고 이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욕봉사에 대하여 비장애인들은 남을 도와준다는 선량함으로 포장하여 당연한 일로써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관련 예규

제10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의복의 선택)

1. 장애인은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라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상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택·구입을 하되, 담당직원의 임의대로 구입할 수 없다.

② (의복의 착·탈)

1. 장애인의 의복의 착·탈 시에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착의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토록 한다.
3. 중증 장애인의 의복 착·탈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성의 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1. 장애인의 개인적 의복은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별 옷장에 보관되도록 한다.
2. 장애인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담당직원이 장애인의 의복 정리 지원 및 의복 폐기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획일적 의복 착용의 제한)

1. 시설 내·외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다만 캠프 및 체육대회 등 단합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특성상 동일한 종류·색상의 의복이 후원되었다 하여도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여서는 안되며, 시설장애인의 정원 중 1/10 이상이 동일 의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이·미용)

1. 장애인은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이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설 내에서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을 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애인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헤어 젤, 빗, 밴드 등의 머리손질도구를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다.

⑥ (화장)

1. 장애인은 각자의 성별·연령과 취향, 피부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선택한 화장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⑦ (화장실 이용)

1. 장애인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도 안된다.

2. 화장실은 사적공간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⑧ (목욕)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의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목욕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일상 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하고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11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피복비는 반드시 장애인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 및 물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별 의류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세식 변기로써 여자용은 10인당 변기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목욕탕 및 화장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시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2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과 동의를 최대한 얻어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나.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의 박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개별적 장애인의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부 생활시설의 경우를 보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공간이 부족하며 개인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물품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관하거나 공통물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물품'이라는 개념이 개인마다 다소 큰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품목이라도 개인이 보관·관리케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증진시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개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 제공과 물품관리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춰 개별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개인물품에 대하여 직원이나 외부인이 임의로 열어보거나 처분하는 것은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한 기관과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와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시설 내·외적인 환경 제공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화하였다.

▣ 침해 사례

어느 시설에서 몇 년동안 생활하던 장애인이 타 시설로 이전을 하기 위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작은 옷가방 하나가 모두였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곳에서는 의복은 일괄적으로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고, 개인물품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짐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관련 예규

제14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인물품의 범위) 개인물품의 범위는 화장품, 세면도구, 앨범, 의류 등의 개인생활용품 외에 본인이 선물로 받은 물품, 장신구, 책 등 장애인이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여기는 모든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피복	의류, 속옷, 신발 등
장신구	머리핀, 지갑, 허리띠, 액세서리, 개인거울 등
화장품류	파우더, 기초화장품, 립스틱 등
가전제품류	카세트, 이어폰, 핸드폰, 컴퓨터, CD플레이어 등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품류	상장, 앨범, 사진 등
교재류	잡지책, 학습지, 각종 책 등
세면도구류	칫솔, 치약, 수건 등
취미관련 물품류	개인적 취미활동 물품 예) 십자수관련용품 등
침구류	베개, 이불 등
선물받은 물품	액자, 음악 테이프 등
기 타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각종 물품

② (개인물품의 구입)

- 장애인은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취향 및 욕구에 따라 스스로 구입하도록 한다.
- 기관에서 제공되는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의 구입은 장애인의 개인적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비용으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소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개인물품으로 간주도록 한다.
- 전 호에 의해 장애인이 개인물품의 구입을 위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은 후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개인물품의 보관)

- 장애인은 개인의 물품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개인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은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에 따른 열쇠의 보관도 장애인이 하도록 한다.
- 중증장애인으로 개인물품의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 해당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개인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건장치를 최대한 개별적으로 확보·비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에 대한 기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6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관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동의 및 의사에 반하여 개인물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나.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장애인의 주거생활 보장이라 함은 과거 생활시설의 특성상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마련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생활시설'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 약간은 냄새나고, 더럽고, 복도와 방이 즐비하고,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외적 이미지는 장애인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 장애인 역시 불결하고 능력없는 사람으로 낙인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장애인 역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주거서비스 제공을 주기능으로 하는 생활시설은 당연히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소규모화된 거주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공간이 소규모화 되면 될수록 시설이 획일적이지 않고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거공간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주거공간이 가능한 하나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유지된다면 시설의 집단화가 축소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한 기관과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예산적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영역이기에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 확립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고, 특히 장애인 스스로 주거내 공간배치와 환경미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공간이 시설직원에 의해 가꾸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침해 사례

이 사례는 강원도 정선의 미신고 시설에서의 일이다. 어느 특수교사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정선의 시설은 도저히 인간이 살 곳이라는 여길 수 없는 곳이었다. 데지사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50~60년대 전쟁후 사진에서나 보는 그런 가건물에 빽빽 깍은 머리, 한여름인데 입고 있는 겨울내복, 굽은 무릎상처와 묶인 손목자국들, 점심으로 먹는 고자.....

입소할 때는 5천만원을 내던지, 월30만원을 내야하고 만약 이 시설에 들어와 있는 동안 가족이 연락을 끊을 경우에도 무연고자로 신고하여 정부지원금을 3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고 입소상담시 이야기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입술의 상처딱지를 손톱깍기로 잘라버리고 과자를 주면서 새모이 주듯 바닥에 뿌리거나 입에 쑤셔 넣어주는 관리아줌마와, 대낮에 술에 만취해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도와주는(?)아저씨, 방안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봐도 누구하나 해결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아동, 청소년 40여명은 그렇게 몇 년째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설원장은 '자기 아들도 이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있다. 우리 아들이라고 특별히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하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실제로 중증의 정신지체를 가진 자기아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부를 뒤져보니 적복한 후원금과 인가시설을 만들겠다고 가짜서류를 꾸미는데 들어간 돈과 그 근처의 땅들을 상당한 정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자기아들의 방패막이로 하여, 자기의 부정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전국에 천여개가 넘는 미신고시설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태도는 아직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지금도 소위 '좋은 일'이라는 허울 속에 수십수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미신고시설, 기도원 등에 갇혀 지내고 있으니, 하루빨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랄뿐이다.

관련 예규

제1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주거환경의 조성)

- 장애인은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구조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성별에 맞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은 실내 환경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튼, 침대 커버, 조명 등 실내 장식의 주기적 변화를 피할 수 있다.
- 장애인은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장애인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주거환경은 최대한의 미적조화를 달성해야 한다.

② (숙소 배치)

1. 장애인은 본인의 숙소 배치를 위한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평상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 장애인과의 상호관계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이 거주하는 숙소의 인원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숙소 내에 본인의 사적물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4. 장애인은 본인의 생활공간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시숙소 배치)

1. 장애인이 본원에 신규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임시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2. 임시숙소의 배치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의 기본적인 습관 및 태도, 능력 등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함이므로 관찰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숙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시설 내·외적으로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을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3. 기관은 장애인의 생활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추구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과 관련되어 외부의 후원물품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0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당직원이 임의로 장애인의 숙소를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의 생활공간 내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공간배치 및 환경미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주거공간을 불특정인에게 개방하여서는 안되며,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라. 종교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종교생활 보장이라 함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가 생활시설

의 장애인에게도 보장됨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다.

동 규정의 경우,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종교계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설립이념을 무시하고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 이제는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사유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문제에 있어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시설의 장애인에게도 종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종교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종교생활의 보장을 위한 기관과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우선 장애인의 신규입소 및 이용시에 기관의 종교를 사전에 공지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종교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비장애인의 또래집단과 어울리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다.

▣ 침해 사례

○○○는 ○○○회에 입소할 때 천주교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천주교를 종교로 갖고 있지만, 전원되어 ○○○집에 입소할 때는 기독교를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복지관 그룹홈에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기관은 천주교를 이념으로 삼는 기관이라 다시 천주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관련 예규

제2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의 종교 선택)

-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 장애인은 종교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택된 종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장애인의 종교 활동)

- 장애인은 본인이 선택한 종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2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신규입소 및 이용자에게 본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관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기관의 종교이념에 맞지 않는 타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4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미. 성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성생활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같이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문제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화두가 되어 많은 논의과정과 교육기자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과정을 보면 과정이야 어찌되던 간에 결론적으로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성생활 역시 비장애인의 그것과 같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성적 권리와 성적 욕구의 표현, 성의 결정 등에 대하여 명문화하였고, 다만 세부적인 영역의 보장을 서술하기보다는 제한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성생활의 보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생활의 제한이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명문화하였고, 이러한 제한은 단계적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침해 사례

H씨는 명절을 맞아 이혼한 어머니의 집에 외출을 나갔다가 시설에 귀원을 하였다. 그런데 외출을 갔다 온 H씨는 평소보다 많이 불안해하고 말이 나 행동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등의 성적인 표현을 계속 말하기에, 어머니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H씨가 활정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어서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상담을 의뢰한 경우이다.

이 경우의 상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녀였던 경우에는 강간상해로 의율되어 보다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그때 정신지체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인데 사안과 피해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진술이 일관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하는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 보태어진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 예규

제26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장애인은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직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용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8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에 대한 상담과 교육시 담당직원은 너그러운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장애인의 성적 행동에 대하여 담당직원은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한다.

3. 장애인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하며 성교육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성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성적 욕구나 표현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2. 낙태 또는 불임시술과 같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0조(제한범위의 절차) ①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담당직원이 성생활의 제한에 대한 사유 및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2. 위원회에서는 부모,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의 의견 취합 및 사실조사
 3.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동의
 4.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지도방침 및 대응책 제시·시행
- ②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연고자 등 당사자에 의한 요청
 2. 위원회에서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3. 장애인 및 연고자의 최종 결정

바. 식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식생활 보장이라 함은 시설에서 제공되어지는 식단 및 간식에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먹는 문제는 주거환경의 제공과 더불어 생활시설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식생활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즐거운 식사를 한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식사를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주어야 장애인들이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즐거운 식사 경험이 장애인의 식생활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계비 지원 단가를 보면 먹는 문제가 삶의 희열과 만족감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현실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식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기관은 정부보조금 이외의 후원금 등을 통해 주·부식비의 상향 조정을 규정화하였고, 장애인의 음식 선택에 있어서도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화하였다. 또한 단체식보다는 가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식기 지원을 포함하였고, 간식에 있어서도 가급적 일괄적인 배분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종류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침해 사례

지난 1999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한국장애인인권백서'에 보면, 각종 사회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중 시설 내에서 장애인을 순종시키기 위하여 식사를 제한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 조사인원 576명 중 22.9%인 132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신지체와 청각·언어장애가 각각 34.9%와 34.1%로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의 21.1%와 16.9%와 거의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 예규

제32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보장)

1. 장애인은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의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영양사는 단체급식의 식단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매 끼마다 정기적으로 4찬 이상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선호 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이 선호 음식에 대해 추가 욕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5. 단체식의 배식 또는 섭식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식의 보장)

1. 장애인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공간에서 자유로운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동 항을 보장하는 방법은 위 제1항의 방법과 같다.

③ (보조기구 및 환경의 지원)

1. 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의 식사환경은 최대한 쾌적하여야 하며, 식사를 하기 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간식의 선택·결정)

1. 장애인은 주식 이외의 간식에 있어 본인의 기호식품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은 기관의 간식비 또는 개인용돈을 사용하여 스스로 구입·섭취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간식의 종류와 시간을 가능한 한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기관의 집단적인 간식 지급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33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기관은 식사 및 간식지급에 있어서 최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관은 최대한 일반화된 식기나 가정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에서 보조되는 주·부식비 및 간식비는 반드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의 상향 배정을 위해 외부 후원금이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4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담당직원은 평상시 장애인의 식습관을 관찰하여 개인별 선호 음식을 옮바르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음식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해 간호사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사. 프로그램의 참여 등 보장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과 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

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결정권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 보호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사회에 폐가 되는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수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적 개념의 시설은 생활패턴과 원조의 형태가 장애인의 욕구와 일치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과정적 단계로써의 주거서비스와 재활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생애주기와 능력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수립·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 통합재활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명문화하여 기록하였으며, 동 규정 이외에 별도의 '장애인통합서비스지원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침해 사례

상담자는 누나이고 올해 34세인 정신지체2급 남동생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였다. 남동생은 22세 까지는 "000"이라는 재활기관에서 지내다 발작증세가 심해져 퇴소하고 지금껏 집에서 지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작증세는 거의 안하지만, 간혹 난폭한 행동을 보여 걱정이 많다고 한다. 얼마 전엔 혼자 집을 나가서 이를 만에 "000집"에서 찾아오기도 했고 그 이후로 못 나가게 하면 난폭해 져서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한 적도 있다.

요즘 무작정 집에만 데리고 있는 게 적절하지만은 않은 것 같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으니 오죽 답답하리라 생각도 들고 나이드신 어머니가 걱정도 많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동생이 사회와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관련 예규

제36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 장애인은 본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의료재활 등)에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은 본원에 입소한 이후 통합재활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수립회의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재활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 장애인은 기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에 있어 본인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

제37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기관은 장애인의 개별적 통합재활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기관은 장애인의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기관은 장애인이 통합적 지역사회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8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보호차원의 활동보다는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외부활동 참여에 따라 장애인의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한의 관찰을 통하여 욕구를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